

제28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순서

□ 5분 자유발언 : 1명

- 신미정 의원 : '공공 디자인' 활성화를 촉구한다.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

- 상정안건 :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
- 보고자 : 신미정 위원장

□ 총무위원회 심사보고

- 상정안건 : 조례안 1건, 일반의안 1건
- 보고자 : 김향란 위원장

□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

- 상정안건 : 일반의안 1건
- 보고자 : 최준규 위원장



의 사 일 정

【제28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17.(금) 10:00>

부 의 안 건	비 고
<p>【제2차 본회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창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2. 거창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3. 거창군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안 4. 거창군 교육경비에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가북면 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 6.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p>【산 회】</p>	<p>※ 운영위원회 1~3</p> <p>※ 총무위원회 4~5</p> <p>※ 산업건설위원회 6</p>

※ 본 일정은 의회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28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5. 1. 17. 10:00)

5분 자유발언

‘공공 디자인’ 활성화를 촉구한다.



신미정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신 미 정 의원입니다.

거창군은 지난 2011년, 경상남도 내 최초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를 제정했습니다.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시설물을 공공적 가치와 거창의
역사, 문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설계대로 설치해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고양하고, 심미적, 기능적 가치를 향상시켜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거창군은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은 지난 2020년 12월,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 용역’ 을 완료했고, 해당 용역의 결과물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도 까지 공공디자인을 ‘시행’ 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설치된 아림로 가로등을 보면, 용역 결과에 따른 표준 디자인을 전혀 따르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창읍 내 도심을 살펴봐도 표준 디자인 계획에 맞는 시설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약 2억 원을 들여 수립한 용역입니다. 그 용역의 결과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면, 왜 용역을 시행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지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은 2020년 12월에 최종 보고됐으며, 2021년부터 적용했습니다.

해당 용역을 위한 예산은 시행 2년 전인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했고 착수보고회를 2020년 1월 8일에 진행했습니다.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2026년부터 새로운 결과물을 업무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늦어도 2025년도 본예산에는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어야 했지만, 이번 예산에는 빠졌습니다.

빨라야 1차 추경일 것이고, 미리 절차를 준비하더라도
용역 기간은 6개월 정도로, 제대로 된 용역이 가능할지
걱정입니다.

타 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소울 드롭스 벤치를 설치해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iF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했고, 인천시는 보행
안전 안심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병원 주변을
H Zone으로 지정, 안전을 보호하는 다양한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군수님께서서는 지난 7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거창’ 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5년마다 새로이 계획되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제대로
수립해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역 수행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타 자치단체의 선도 사례를
분석한 뒤 거창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을 수립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해 누구나 살고 싶은
거창을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조례 · 규칙안 심사보고서



거창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목 차

1	거창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1
2	거창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5
3	거창군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안	12

거창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1. 17.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 12. 30

나. 발 의 자: 이흥희 의원 대표발의(11명)

(이흥희,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4. 12. 30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25. 1. 1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흥희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보고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이 충실히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자치행정을 실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2) 의회에 의결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한 규정 (안 제2조)
- 3) 의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에 대한 규정 (안 제3조)
- 4) 제출하는 의안의 형식과 제출 시기에 대한 규정 (안 제4조~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영미]

- 본 조례안은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과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아야 할 사항을 규정하여 군정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군민의 의견이 적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안 제1조에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2조와 제3조에 의결사항과 보고사항 등을 명시하여 업무추진에 혼란이 없도록 하였음.
- 안 제2조제3항에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이와 내용이 중복되는 「거창군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거창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거창군의회에서 의결할 사항과 거창군의회에 보고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의견이 충실히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자치행정을 실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결사항 등) ①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른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경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이용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3.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 합의 및 양해각서 등(이하 “협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 ②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조(보고사항 등) ① 의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연도 주요업무계획 및 시행계획
 2. 중기기본인력 운영 계획
 3. 제2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 등을 군수가 취소하거나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으로 거창군의회 의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 등

의 방법으로 의회에 알리고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

제4조(의안형식) 제2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계획을 세우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
2. 의회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후 동의안 형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의결되어야 사항 및 보고해야 할 사항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거창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라 행한 절차 및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거창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1. 17.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 12. 30

나. 발 의 자: 김혜숙 의원 대표발의(11명)

(김혜숙,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다. 회부일자: 2024. 12. 30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25. 1. 1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혜숙 의원]

가. 제안이유

- 거창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2) 의장의 책무.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안 제3조 ~ 제5조)
- 3)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센터의 설치 (안 제6조)
- 4) 피해 신고의 접수,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와 지원 등 (안 제 7조 ~ 제 9조)
- 5)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 (안 제10조)

- 6) 보복 행위 신고, 거짓신고 금지 및 실태 조사 (안 제11조 ~ 제14조)
- 7)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영미]

- 조례안은 총 1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음.
 - 안 제3조에 의장의 책무, 안 제5조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 피해신고센터 설치와 신고의 접수,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와 지원, 징계처분 등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음.
- 직장 내 괴롭힘은 조직 구성원 개인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조직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로, 상호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고 적극적인 예방과 직원 보호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상위법령 검토 결과 저촉 사항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1부.

거창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회 의원과 공무원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등”이란 거창군의회 소속 공무원(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원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2. “직장 내 괴롭힘”이란 거창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등이 다른 의원, 공무원등에 대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하거나 직위·직책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다.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한 업무를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처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 라.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성차별·성희롱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 마.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
 - 바.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 방해 행위
 - 사.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 시키는 행위
3.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의원, 공무원 등을 말한

다.

4. “신고자”란 피해 직원 외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한 누구나를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①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등이 소속된 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이하 “괴롭힘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추진과제 및 세부 시행방법
3.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에 필요한 예산과 자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의장이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신고·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하여 거창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신고·지원센터(이하 “신고·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접수
2. 피해자의 심리 및 법률 상담
3. 2차 피해 모니터링 등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지원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의장은 신고·지원센터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우 피해자나 신고자를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의 접수) ① 누구든지 신고·지원센터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직장 내 괴롭힘 내용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의장이 제시하는 기간 내에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구술로 신고를 접수하는 사람은 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신고자가 이를 확인하게 하고 신고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녹취하는 방법으로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받을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대리인의 인적사항으로 같음한다.

제8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의장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심리상담 치료 및 회복
2.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와 피해자의 업무분장 및 업무공간 분리 등 신변 보호 조치
3.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긴급보호 등 지원체계 구축
4.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5. 그 밖에 의장이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피해자 및 신고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 등의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누설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③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④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징계 처분 등) ① 의장은 관련 기관의 조사결과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확인된 경우,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2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② 의장은 관련 기관의 조사결과 공무원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확인된 경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의 관리자·상급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비밀보장을 소홀히 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보복행위의 신고) ① 피해자 및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의원과 공무원등으로부터 불이익한 처우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경위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거짓 신고의 금지) ① 신고자가 거짓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②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협조자의 보호) 신고자 외에 진술이나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내용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실태 조사) 의장은 의원과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와 관련하여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상·하반기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의원 및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성인지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2025. 1. 17.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 12. 30

나. 발 의 자: 신재화 의원 대표발의(11명)

(신재화,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4. 12. 30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25. 1. 1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신재화 의원]

가. 제안이유

- 의회에서 제정·개정하는 규칙에 대하여 공포절차를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거창군의회 규칙·공포에 대한 사항을 공포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1) 목적(안 제1조)
- 2) 의장이 공포하는 규칙(안 제2조)
- 3) 전문(안 제3조)
- 4) 규칙번호(안 제4조)
- 5) 절차(안 제5조)

6) 공포일(안 제6조)

7) 시행일(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영미]

- 본 규칙안은 거창군의회에서 제·개정하는 규칙에 대하여 공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절차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 지방의회규칙이나 회의규칙은 주민들에게 일부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 성격은 지방의회 내부 규범이고, 지방자치법에서도 공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의회 의결만으로도 효력을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나
- 지금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공포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왔으며,
 - 지방의회규칙이나 회의규칙도 자치법규의 일종으로서 방청 규칙 등의 경우처럼 주민들과 직접 연관된 부분도 있으므로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하고,
 - 공포권자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지방의회에서 제안하여 의결하는 규범인 점을 고려하면 조례와 달리 지방의회 의장이 전속적인 공포권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 규칙안을 제정하는 것이 의회의 법제 사무처리에 명확한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안 1부.

거창군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규칙의 공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장이 공포하는 규칙)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0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의회규칙
2. 법 제83조, 제97조,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회의 규칙

제3조(전문) ① 규칙 공포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②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제4조(규칙 번호)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이 경우 별지 서식의 규칙 공포대장에 기록한다.

제5조(절차) ① 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은 의결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회 사무과장이 공포절차를 밟는다.

② 규칙은 거창군 공보에 게재하거나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포한다.

제6조(공포일) 규칙의 공포일은 규칙을 게재한 거창군 공보가 발행된 날이나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7조(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포하는 규칙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전 규칙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한 규칙은 이 규칙에 따라 공포한 것으로 본다.

조례안 · 일반의안 심사보고서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구교육과 (의원발의)	1
2	거창군 가북면 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	경제기업과	6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 17.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 12. 30.

나. 발 의 자: 이재운 의원 대표발의(11명)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흥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4. 12. 30.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5. 1. 1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재운 의원]

가. 제안이유

-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등학교 등이 협약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
- 교육부의 2024년 첫 시행 신규 정책인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에 발맞춰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제2조 제6호 신설

-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의 육성에 필요한 교육경비지원사업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조례 개정안은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2조 보조사업 범위에 제6호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의 육성에 필요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임.
- 2023년 8월, 교육부에서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 자료에 따르면 직업계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장이 원하는 협약형 특성화고 35개, 마이스터고 65개 등 100개교를 집중 육성하여 디지털 시대의 주인공이 될 기술인재를 양성한다고 발표함.
- 이에, 2024년부터 지자체·기업·특성화고 등 지산학이 연계한 소수 정예로 지역완결형(교육-취업-정주) 정주 인재를 양성하고 있음.
- 협약형 특성화고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 지역의 전략 산업과 연계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 기업과 지역 내 유관기관은 인재상 설정부터 산·학 융합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까지 학교와 공동으로 수행하며,
 - 기업은 현장실습과 채용을, 대학은 심화 및 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담당하는 역할을 분담해야 함.
- 교육청은 자율학교 지정과 교장 공모제 추진, 교사 충원과 산학 겸임교사 활용, 재정 투자를 통해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취업 지원과 함께 지자체 내의 다양한 청년 정책 사업과 연계하여 학생의 정주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됨.

- 교육부는 2027년까지 35개 육성, 45억원 재정 지원할 예정이며, 협약형 특성화고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지자체-교육청-지역기업-특성화고의 협치, 관련 조례 제·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참고로, 2024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공모에 15개 지역 총 37개 연합체가 참여하여 최종적으로 9개 지역 10개 협약형 특성화고가 선정되었음.

< 24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연합체 선정 결과 >

연번	시도	분야	학교	지자체
1	서울	철도	용산철도고등학교	서울특별시청, 용산구청
2	인천	반도체	인천반도체고등학교	인천광역시청
3	인천	항공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	인천광역시청
4	대전	방산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대전광역시청
5	강원	관광농업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	강원 춘천시청
6	충남	기업SW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충남 천안시청
7	전북	치즈·바이오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전북특별자치도청, 임실군청
8	경북	이차전지	포항흥해공업고등학교	경상북도청, 포항시청
9	경남	어선 해기사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	경상남도청, 남해군청
10	제주	항공우주	한림공업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청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제7호로 이동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의 육성에 필요한 교육경비 지원사업
7.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가북면 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 1. 17.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4. 12. 27.

나. 제출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4. 12. 30.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5. 1. 1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가. 제안이유

- 한국남부발전(주)에서 가북면 우혜리·용산리 일원 양수발전소 설치 제안
 - 1) 설비용량 600MW, 사업비 1조 5천억 정도
- 가북면 양수발전소 유치 요청 결정위원회 유치 찬성 동의서 제출
 - 1) 2024. 12. 9.(월) / 유치 요청 결정위 → 거창군

나. 주요내용

- 사업개요
 - 1) 위 치: 가북면 우혜리 산30(상부지)·어인길 300(하부지)
 - 2) 설비용량/사업비: 600MW / 1조 5천억 정도
 - 3) 사업기간: 2024년 ~ 2038년(13년)
 - 4) 사업시행자: 한국남부발전(주)

○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발전 방안

- 1) 특별지원사업비(1회성): 약 225억(소득증대, 복지증진 등)
- 2) 기본지원사업비(58년간): 약 304.5억원(소득증대, 복지증진 등)
- 3) 사업자지원사업비(58년간): 약 174억원(소득증대, 복지증진 등)
- 4) 지방세 수입: 약 7억원 정도(무주 양수발전소 600MW기준)
- 5) 새로운 관광자원 명소화 및 지역 발전(도로 등) 기반 구축 등

○ 향후 계획

- 1) 2025. 1. ~ 2025. 6.: 유치위원회 구성 및 유치활동
- 2) 2025. 6.: 유치 제안서 제출(거창군→한국남부발전(주))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해당 동의안은 가북면 우혜리 산 30번지와 어인길 300 일원에 양수발전소를 유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사업자는 한국남부발전(주)이며, 가북면 양수발전 유치요청 결정위원회에서 동의한 사항임. ※ 해당지역은 생태자연도 1·2등급지 분포 지역임
- 2024. 10. 21. : 신규 양수발전 사업개발 공식 제안(남부발전→거창군)
 - 2024. 12. 09. : 가북면 양수발전 유치요청 결정위원회 유치 동의서 제출 (결정위→거창군)
- 아울러, 해당 동의안의 경우 양수발전소 선정을 위한 우선순위 심사기준 평가표 내 사업이행력(40점) 중 지역수용도(15점)에서 지자체의 유치지지 선언(3점)에 해당되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하도록 함에 따라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5월 31일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실무안을 공개했음.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38년까지 신규원전 진입과 수소 발전의 확대, 그리고 태양광, 풍력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증가로 무탄소 비중 70% 도달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주요내용 >>

- ① 신규전원은 무탄소를 우선하여, '38년 발전량 중 무탄소 비중 70%
- ② 태양광·풍력은 '30년까지 '22년 실적 23GW 대비 3배 이상인 72GW 전망
- ③ '38년까지 재생에너지 120GW 보급 전망
- ④ 신규 대형원전은 4.2GW(3기)까지 가능, SMR은 0.7GW(1기) 실증분 반영 등임.

< 발전량 및 발전비중(안) (단위 : TWh, %) >

구분	원전	석탄	LNG	신재생	수소 암모니아	기타	합계	탄소	무탄소
10차 2030년	201.7 (32.4%)	122.5 (19.7%)	142.4 (22.9%)	134.1 (21.6%)	13.0 (2.1%)	8.1 (1.3%)	621.8 (100%)	-	-
11차 2030년	204.2 (31.8%)	111.9 (17.4%)	160.8 (25.1%)	138.4 (21.6%)	15.5 (2.4%)	10.6 (1.7%)	641.4 (100%)	301.9 (47.1%)	339.4 (52.9%)
11차 2038년	249.7 (35.6%)	72.0 (10.3%)	78.1 (11.1%)	230.8 (32.9%)	38.5 (5.5%)	32.5 (4.6%)	701.7 (100%)	209.1 (29.8%)	492.6 (70.2%)

- 우리군에 유치하고자 하는 양수발전소는 1조 5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으로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무주 양수발전소 (600MW)의 경우 연간 7억원의 지방세 수입이 발생하며,
- 영동, 홍천, 포천 양수발전소 사례를 보면 연간 4~5천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그 밖에도 신규 일자리 창출, 새로운 관광 자원화 등 긍정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는 하나, 실제 양수발전소 인근이 관광으로 활성화 되었는지는 검증이 필요해 보임.

- 지난해 충남 금산, 전남 곡성, 전남 구례, 경북 봉화, 경북 영양, 경남 합천 등 6개 군에서 양수 발전 유치에 나서 충남 금산, 전남 구례군, 경북 봉화, 경북 영양군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 최근 진안군과 하동군에서 2025년도 공모사업 신청에 대비해 군-의회-발전소 간 유치 공동 협약을 체결하는 등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음.
- 현재 준비 중인 지자체와 지난해 탈락한 지자체에서도 재공모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거창군에서도 공모사업 준비를 위해서는 유치위원회와 지자체, 한국남부발전(주) 간 빠르고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임.
- 다만, 양수 발전기 설치 과정에서 산지 절개와 송전 및 변전 시설 설치, 토석장 등에 의한 환경 파괴로 산지 자체의 지형이 변하고 생태 훼손이 발생할 수 있으며,
- 양수발전소는 24시간 동안 가동되는 전력 시설이 아닌, 전력 피크타임에 보조 전력을 제공하는 시설로 필요한 시간에만 한정적으로 운영하기에 경제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 건설사업비가 1조 5천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만큼 일부 반대하는 여론도 감안하여 양수발전소 부지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하여 주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 또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반드시 동의서를 확보해야 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일 반 의 안 심 사 보 고 서



산업건설위원회

목 차

- 1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
-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 1. 17.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24. 12. 27. /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4. 12. 30.
- 다. 상정일자 : 제28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5. 1. 1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산림과장)

- 향노화힐링랜드를 찾는 국민들에게 전문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및 제21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의 규정에 의하여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을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민간 업체에 위탁 운영코자 함

3. 주요내용

- 가. 사업명 : 2025년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위탁 운영
- 나. 위치 : 향노화힐링랜드 일원(거창군 가조면 의상봉길 834)
- 다. 사업비 : 87,000천원(국 43,500 도 30,450 군 13,050)
- 라. 사업량 : 숲해설가 1명, 산림치유지도사 2명
- 마. 시설현황

- 1) 자연휴양림 : Y자형 출렁다리, 자생식물원, 숲속놀이터 등
 - 2) 치유의 숲 : 무장애숲길, 산림치유센터, 숲체험장, 명상숲길 등
- 바. 위탁대상 사무 : 산림서비스(숲해설·산림치유) 기획·운영
- 1) 산림서비스 신규개발 및 홍보물 제작
 - 2) 전 연령층 맞춤형 산림프로그램 제공
 - 3) 프로그램 운영, 설문조사(피드백) 및 결과를 통한 효과 분석
- 사. 위탁기간 : 2025. 4. ~ 12.(예산범위내) ※ 국·도비 예산확보 사업
- 아. 향후계획
- 1) 사업계획 수립(사업규모 및 과업목표 설정)
 - 2) 사업자 선정(사업공고 접수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선정)
 - 3) 협약체결 → 사업수행 및 평가

4. 참고사항

- 가. 2024년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민간위탁 운영실적
- 1) 운영기간 : 2024. 4. ~ 12.
 - 2) 장 소 : 향노화힐링랜드 일원
 - 산림치유센터, 자생식물원, 숲속놀이터, 무장애데크로드, 명상장 등
 - 3) 대 상 : 유아에서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
 - 4) 인 원 : 1회 20명 이내
 - 5) 위탁기관 : 좋은숲(대표 신승호)
 - 6) 운영방법 : 각 프로그램별 숲해설가(1인)·산림치유지도사(2인) 자율 진행
 - 7) 참여인원 : 총 4,039명(숲해설 1,720명, 산림치유 2,319명)
 - 8) 신청방법 : 힐링랜드 홈페이지 및 전화접수 예약, 당일 현장모집
 - 9) 체 험 료 : 숲해설 무료 / 산림치유 어른 1만원, 청소년 5천원
 - 10) 프로그램 : 숲해설 및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 숲 해 설 : 주5일, 일3회(10:00~11:00, 13:00~14:00, 15:00~16:00)

- 산림치유 : 주6일, 일2회(09:30~12:00, 13:30~1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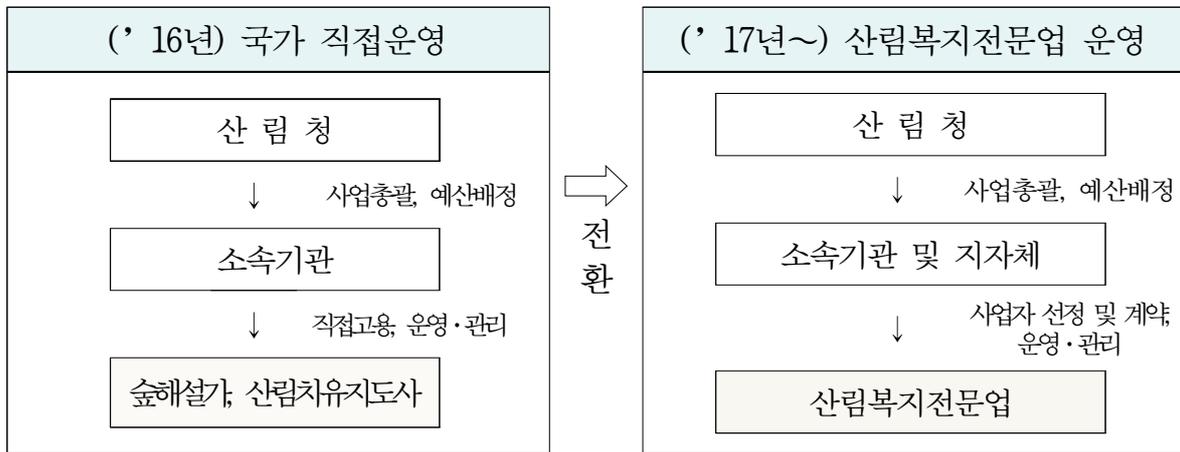
※ 계절별 힐링랜드 현장에 맞추어 프로그램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운영

11) 세외수입 : 금15,946천원(산림치유프로그램) ※ 숲해설 무료

나.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장점

-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을 산림복지전문업을 통해 위탁(운영) 함으로써 양질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민간분야 활성화

<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으로 전환 >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동의안은 향노화힐링랜드를 찾는 국민들에게 전문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을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민간 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21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의 안정성 향상과 민간 시장의 활성화 도모, 산림복지전문가의 전문성

향상, 산림복지서비스의 다양성 강화를 할 수 있도록 한 취지와 부합하며 붙임문서 2024년도 민간위탁 실적을 보면 다양한 대상에 대하여 활발히 사업이 추진되었음.

- 본 사업은 2025년도 본예산에 산림치유지도사 산림복지 전문업 위탁 57,000천원(국28,500, 도19,950, 군8,550),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30,000천원(국15,000, 도10,500, 군4,500)의 국·도비가 기 확보되었고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민간위탁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